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6년 3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9일
개정: 2012년 3월 5일
개정: 2020년 3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ITS학회(이하 학회)의 논문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개최한다. 학회 회장은 부회장중 1인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를 연구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표절)

-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

- 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5조(동시 논문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논문 중복 게재)

- 1)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 2)
 - ① 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② 기준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준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논문 재투고)

본 학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저자충족 요건)

본 학회 논문지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① 연구의 개념이나 구상 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서 실질적인 기여
- ② 연구의 중요한 지적 내용(intellectual content) 부분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거나 수정
- ③ 출판 될 논문의 최종 버전에 대한 최종 승인
- ④ 연구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 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동의

제3장 편집위원 규정

편집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제 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규정

심사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회)에게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심사결과기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5조 (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内外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2/3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 발생 인지 후 3개월 이내 심의 의결한다.

제17조(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이의제기 후 3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내용을 재확인 수정한다.

제18조(비밀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별칙

제19조(별칙)

-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나. 논문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최종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재 사항을 결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가 동시 논문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중단한다.
 - 나. 동시 논문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